

신특허법사례 초판 1쇄 정오표

(2023년 03월 29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3년 02월 28일 발행된 “신특허법사례” 초판(2023년)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특허법사례 초판(2023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3년 03월 29일 기준)

2023년 02월 28일 발행된 신특허법사례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신특허법사례_초판(2023년), 1쇄〉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25 4번째 줄	(생략) ~ 방법발명인 제2항의 침해 여부가 ~ (생략)	(생략) ~ 방법발명인 제1항의 침해 여부가 ~ (생략)	내용수정
p. 38 6번째 줄	(생략) ~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시행령 제5 조 제5항의 거절이유 ~ (생략)	(생략) ~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시행령 제5 조 제6항의 거절이유 ~ (생략)	내용수정
p. 40 2번째 줄	1. 가능식 청구항 의의 및 필요성	1. 가능식 청구항 의의 및 필요성	오타자수정
p. 59 17번째 줄	甲의 전기매트(P)는 의약 용도발명과 같은 화학발명이 ~ (생략)	甲의 전기매트(A)는 의약 용도발명과 같은 화학발명이 ~ (생략)	내용수정
p. 59 24~ 25번째 줄	i)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설명으로 뒷받 침하는 기준시점은 출원 시이다. ~ (생략)	i)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출원 시이다. ~ (생략)	내용수정
p. 62 22번째 줄	(생략) ~ 甲이 국어번역문에 ‘물질 a’만 기 재한 경우 ~ (생략)	(생략) ~ 甲이 국어번역문에 ‘물질 A’만 기 재한 경우 ~ (생략)	내용수정
p. 66 15번째 줄	(생략) ~ (제42조의2 제2항, 法 제42조의3 제4항)되며, ~ (생략) ~ (法 제62조 제2항) ~ (생략)	(생략) ~ (제42조의2 제3항, 法 제42조의3 제4항)되며, ~ (생략) ~ (法 제64조 제2항) ~ (생략)	내용수정
p. 109 13~ 14번째 줄	국어번역문의 기재는 최초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2016.6.1. 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g가 명 시적으로 ~ (생략)	국어번역문의 기재는 출원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방식위반을 이유로 보정을 명받은 후 보정한 청구범위를 제출한 날(출원 일)인 2016.7.1.자 기준으로, 명세서에 g가 명시적으로 ~ (생략)	내용수정
p. 128 14번째 줄	乙은 제2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 권이 甲에게 ~ (생략)	乙은 제2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 권을 甲에게 ~ (생략)	내용수정

p. 129 14번째 줄	(생략) ~ 경우이므로, 乙은 戊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 (생략)	(생략) ~ 경우이므로, 丁은 戊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 (생략)	내용수정
p. 129 21번째 줄	(생략) ~ 해당하여 甲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략) ~ 해당하여 乙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내용수정
p. 129 밑에서 2번째 줄	戊가 양수받은 특허권이 乙에게 이전된 경우, ~ (생략) ~ 甲에게 민사적 책임 ~ (생략)	戊가 양수받은 특허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 (생략) ~ 乙에게 민사적 책임을 ~ (생략)	내용수정
p. 130 밑에서 3번째 줄	(생략) ~ 乙은 정당권리자로서 특허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 (생략)	(생략) ~ 丁은 정당권리자로서 특허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 (생략)	내용수정
p. 166 8번째 줄	(1) 보정을 수반한 재심사 청구(法63조의2)	(1) 보정을 수반한 재심사 청구(法67조의2)	내용수정
p. 166 16번째 줄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法132조의3)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法132조의17)	내용수정
p. 166 밑에서 9번째 줄	(생략) ~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분할출원 ~ (생략)	(생략) ~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분할출원 ~ (생략)	내용수정
p. 168 밑에서 6번째 줄	(생략) ~ 통상의 기술자에게 2020.4.4. 기준 최초 ~ (생략)	(생략) ~ 통상의 기술자에게 2020.1.1. 기준 최초 ~ (생략)	내용수정
p. 169 2번째 줄	(생략) ~ 이 역시 2020.4.4. 기준으로 통상의 ~ (생략)	(생략) ~ 이 역시 2020.1.1. 기준으로 통상의 ~ (생략)	내용수정
p. 179 5번째 줄	청구항 1의 판단시점은 일부계속출원일인 2017.8.1.이므로 ~ (생략)	청구항 1의 판단시점은 일부계속출원일인 2017.8.1.이므로 ~ (생략)	오탈자 수정
p. 214 1번째 줄	2. 乙의 특허권의 효력이 丙의 실시발명에 미치는지 여부	2.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丙의 실시발명에 미치는지 여부	내용수정
p. 214 밑에서 3번째 줄	(생략) ~ 따르면, 乙의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생략)	(생략) ~ 따르면, 甲의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생략)	내용수정
p. 226 11번째 줄	(생략)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法 제100조2항)~ (생략)	(생략)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法 제102조2항)~ (생략)	내용수정
p. 259 밑에서 첫번째 줄	간접침해는 침해로 보는 행위로 간주되는바(제135조) ~ (생략)	간접침해는 침해로 보는 행위로 간주되는바(제127조) ~ (생략)	내용수정

4 신특허법사례

p. 263 지문 (2) 3번째 줄	(생략) ~ ② 甲이 X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어서, 甲의 특허는 무효이고, ~ (생략)	(생략) ~ ② 甲이 X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어서, 甲의 특허는 무효이고, ~ (생략)	내용삭제
p. 266 12~ 13번째 줄	지방법원 판례는 ~ (생략) ~ 한 바 있다.	i) 지방법원 판례는 ~ (생략) ~ 한 바 있으며, ii) 또한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내용수정 및 추가
p. 266 밑에서 10번째 줄	(생략) ~ 있으므로, 乙은 선행문헌 2 및 3을 ~ (생략)	(생략) ~ 있으므로, A는 선행문헌 2 및 3을 ~ (생략)	내용수정
p. 278 15번째 줄	판례는 권리확범위확인 대상이 되는 발명이 자유기술에 ~ (생략)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 (생략)	내용삭제 및 수정
p. 281 5번째 줄	(생략) ~ 가공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또는 경우, 권리소진 ~ (생략)	(생략) ~ 가공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권리소진 ~ (생략)	내용수정
p. 288 6~7번째 줄	(1) 乙의 행위가 특허법상 실시에 ~ (생략) ~ (생략) 乙이 방법발명 A를 ~ (생략)	(1) 丙의 행위가 특허법상 실시에 ~ (생략) ~ (생략) 丙이 방법발명 A를 ~ (생략)	내용수정
p. 290 밑에서 7~8번째 줄	(생략) ~ 보상을 받았다는 점, 특허물품의 성질이 달라지는 점은 변함없으므로 ~ (생략)	(생략) ~ 보상을 받았으며, 특허물품의 성질은 변함없으므로 ~ (생략)	내용수정
p. 297 밑에서 7번째 줄	(생략) ~ 주장한 경우, 저 원고의 주장에 따라 ~ (생략)	(생략) ~ 주장한 경우, 먼저 원고의 주장에 따라 ~ (생략)	오탈자수정
p. 310 밑에서 3~4번째 줄	(생략) ~ 부정설, ~ (생략)	(생략) ~ '부정설', ~ (생략)	따옴표 추가
p. 359 지문 (2) 밑에서 2~3번째 줄	(생략) ~ 하면서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생략)	(생략) ~ 하면서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생략)	내용삭제

<p>p. 362 10~ 12번째 줄</p>	<p>(생략) ~ 그 발명의 구성으로 하는 것이다. 즉, 특허심판원에서 초음파 접합과 관련한 정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은 열융착 방식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와는 별개의 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례에 따르면, 甲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p>	<p>그 발명의 구성으로 하는 것이다. 즉, 청구항 제2항의 정정불인정 사유는 청구항 제1항의 정정불인정 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례에 따르면, 甲은 청구항 제2항의 정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p>	<p>내용삭제 및 수정</p>
<p>p. 362 4. 결론 내용 수정</p>	<p>특허법원이 甲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청구항 제1항의 정정이 부적법하므로, 기각 판결은 정당하다.</p>	<p>청구항 제2항에 대해 甲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청구항 제2항을 이유로 판단한 위법이 있으나, 청구항 제1항의 정정이 부적법하여 정정이 전체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인바, 그 결론에 있어서 특허법원의 기각 판결은 타당하다.</p>	<p>내용삭제 및 수정</p>
<p>p. 372 15번째 줄</p>	<p>(1)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 (생략)</p>	<p>法제148조 6호는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 (생략)</p>	<p>내용수정 및 추가</p>
<p>p. 404 지문 (1) 2번째 줄</p>	<p>(생략) ~ 선출원한 특허에 터잡아 특허협력조약 8조의 ~ (생략)</p>	<p>(생략) ~ 선출원한 특허에 터잡아 파리조약 8조의 ~ (생략)</p>	<p>내용수정 및 추가</p>

(추후 업데이트 예정)